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가단5602 보증금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권영균
피 고 전남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
변 론 종 결 2020. 6. 16.
판 결 선 고 2020. 10. 27.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9,032,176원 및 그 중 68,000,000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주위적으로 보증금을,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구하고 있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지원협약 및 추천결정통보서

1) 전라남도는 2017. 1.경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자금 지원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지원협약'이라 한다), 2017. 1. 16. 이 사건 지원협약에 따른 자금 관리업무 일부를 피고에게 위탁하였다.

■ 이 사건 지원협약 (을 제13호증)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 자금 용자에 따른 이자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행정기관’)와 취급은행장(이하 ‘대출취급은행’)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자금 지원 업무를 취급하기로 한다.

제1조(지원계획 및 자금구성)

행정기관은 매년 소상공인 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대출취급은행은 소상공인 자금 용자를 위한 자금을 조성한다.

제2조(용자대상자 통보)

행정기관은 용자업체와 용자금액을 결정하여 대출취급은행에게 통보한다.

제3조(자금용자)

- ① 본 자금은 행정기관이 대출취급은행에게 통보한 업체에 용자한다.
- ② 자금의 용도는 소상공인 창업 및 운영자금이며, 업체당 연간 용자금액은 용자 추천서에 의한다.
- ③ 용자금의 용자기간은 2년 이내이며, 이자 기산일은 대출일자로 하고, 행정기관은 당해 연도 이자지원 계획에 따라 대출취급은행에게 이자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출취급은행은 용자 업체의 용자기간을 1회에 한하여 12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분에 대한 이자는 대출취급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자받은 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 ④ 행정기관이 추천한 업체에게 대출취급은행이 소상공인 자금 용자 시 최대한 낮은 금리로 용자하며,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담보 시 대출금리는 CD(3개월물)금리 + 가산금리[전액보증(100%) 2.0% 이내, 부분보증(85~100% 미만) 3.0% 이내]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추천업체에 대한 이자지원 금리는 전라남도의 정책에 따른다.
- ⑤ 대출취급은행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용자업체를 통보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용자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대출수속을 진행하거나 보증절차를 진행하는 업체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 대출기한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⑥ 대출취급은행은 행정기관이 추천한 용자금을 전액 용자한다. 다만 대출취급은행의 내규에 따라 용자 부적격업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용자절차, 이자불입방법 및 상환방법 등은 대출취급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용자금의 회수는 대출취급은행의 책임 하에 회수한다.

제4조(이자지원금 지급)

① 행정기관은 대출된 소상공인 자금에 대해 이자지원금을 대출취급은행에게 지급한다. 다만, 대출업체의 부도 또는 폐업이 발생한 경우 대출취급은행은 부도, 폐업 전일까지의 이자지원금만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은행은 매월 자금용자상황을 별지4호 서식에 따라(별지 생략, 이하 같다) 익월 5일까지 행정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자지원금은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별지3호 서식에 따라 업체별로 지급신청하여야 하며, 4/4분기 이자지원금은 12월 15일까지 지급 신청하되, 신청기간은 12월 31일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행정기관에 의하여 정산일자는 조정할 수 있다. 단 10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도록 한다.

③ 행정기관은 이자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자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이 확보한 이자지원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④ 대출취급은행이 신청한 이자지원금이 정상적인 이자지원금을 초과하여 신청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다음 분기 이자지원금 지급 시 차감하고 지급한다.

제5조(통지의무 및 사후관리)

① 대출취급은행의 대출취급지점은 대출실행 후 지체 없이 별지1호 서식에 따라 행정기관에게 대출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대출취급은행은 대출현황을 매월 5일까지 별지2호 서식을 행정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은행은 대출자금이 타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사전,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자금을 대출받은 업체의 파산, 부도, 폐업, 이전, 양도, 양수, 상호변경 등 중요한 변동 사항을 대출취급은행이 인지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매월 5일까지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효력 및 유효기간)

① 본 협약서는 행정기관과 대출취급은행이 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본 협약서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다만, 일부 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

대출취급은행은 협약체결 후 본 자금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본 사업목적과 취지에 따라 상호협의한다.

2) 피고는 '2017년 소상공인창업자금(제9차)' 지원대상자로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2017. 4. 6. B에게 추천결정통보서를 발급해주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추천결정통보서'라 한다).

■ 이 사건 추천결정통보서 (을 제1호증의 3)

○ 지원내용

자금용도	신청금액 (백만원)	추천금액 (백만원)	대출조건		대출실행기한
			금리	상환방법	
운전자금	80	80	CD(3개월물) + 3% 이내 (보증서담보 - 부분)	2년 거치 일시상환	2017.6.5.

※ 지원사항: 2년간 대출금리의 3.0% 이자 지원.

나. 피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서 발급 및 원고의 대출

1) 피고는 2017. 4. 28. B과, 보증원금 68,000,000원, 보증기한 2019. 4. 6.로 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B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 이 사건 신용보증서 (갑 제2호증)

- 보증상대처: 원고 봉선동지점
- 보증금액: 68,000,000원. 보증기한: 2019. 4. 6.
- 보증방법: 개별보증
- 대출과목: 기업운전일반기타대출

○ 대출예정금액: 80,000,000원 (부분보증비율: 85%)

○ 특약사항: 본 보증서에 의한 대출은 2017년 전라남도의 소상공인 창업자금에 한함(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임)(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2) B은 2017. 4. 28.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원고와 여신과목을 '기업운전일 반'으로 하는 대출금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여신기간은 2017. 4. 28.~2019. 4. 6.이고, 이자는 매월 지급하고¹⁾, 연이율은 '기준금리(6개월금융채) + 2.07%'이고, 여신개시일에 전액 대출하여 여신만료일에 전액 상환하는 조건이다.

3) 원고가 2017. 4. 28.~2018. 7. 27. 위 대출원금에 대하여 실제로 적용한 연이율(변동이율)은 3.4870%~4.5010%이다(을 제6호증의 3).

다.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청구

1) B이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2018. 8. 28.²⁾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8.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중 보증한도액인 68,000,000원 및 이자 1,032,176원³⁾ 합계 69,032,176원의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9. 1. 25.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대출은 이 사건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가 면책되었다'는 내용의 면책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신용보증약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적용되는 신용보증약관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1) 최초이자: 여신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 2) 최종 이자지급일인 2018. 7. 27.로부터 1개월이 지난 다음날.
- 3) 보증원금 68,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28.~8. 27.(31일) 연이율 4.501%를 적용한 259,948원과 2018. 8. 28.~11. 26.(91일) 연이율 4.555%를 적용한 772,228원의 합계액.

■ 신용보증약관 (을 제4호증의 1)

제5조(신용보증관계의 성립)

① 이 보증서에 의한 신용보증관계는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때에 한하여 성립합니다.

1.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대출이 취급될 것
2. 신용보증통지일 이후에 대출이 실행될 것
3. 신용보증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행될 것

제21조(보증특약의 운용)

- ① 보증특약은 이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② 채권자는 대출실행, 담보취득 등의 업무를 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증특약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22조(면책)

- ① 재단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신용보증조건(보증특약 포함)을 위반한 때
 4. 제5조(신용보증관계의 성립)를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한 때
- ② 제1항의 세부내용 및 면책범위에 대하여는 재단이 정하여 채권자에게 따로 통지한 면책기준에 의합니다(이하 '이 사건 면책기준'이라 한다).

■ 이 사건 면책기준 (을 제4호증의 2)

이 면책기준은 신용보증약관 제22조에 따라 재단이 채권자에게 통지하는 면책기준입니다.

면책사항	면책범위
1. 보증서의 신용보증조건(보증특약 포함)을 위반하였을 때 가. 보증서의 신용보증조건 위반 • 채권자 영업점, 채무자, 보증부 대출과목이 다른 경우	재단책임분담금액 전액 (종속채무도 면책)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 6, 9, 10, 12, 1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보증금)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서 기재 사항을 준수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이자 조건,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 사건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추천결정통보서에 있을 뿐인데, 위 통보서는 원고가 수령한 바 없다. 설령 원고의 대출이 보증조건을 위반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는 이상 피고는 면책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B으로부터 이자를 초과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대출 원금 및 나머지 이자에 대하여까지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다.

2) 예비적 청구(손해배상금)

설령 피고가 면책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정작 구체적인 이자 조건,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추천결정통보서를 원고에게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그 내용을 모른 채 대출을 실행하여 결국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면책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특약사항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신용보증조건에 해당한다. 원고는 위 특약사항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창업자금'이 아닌 '기업운전일반자금'으로 대출을 실행하였고, 차주는 3%의 이자지원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신용보증관계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용보증약관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이 사건 면책기준 제1항 가목에 따라 피고는 보증책임을 면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쟁점

신용보증약관 제5조 제1항 제1호는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대출이 취급될 것을 신용보증관계 성립 요건으로 규정한다. 이 사건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서 기재 내용은 신용보증조건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소상공인창업자금 대출 대신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을 한 것이 이 사건 신용보증서상의 신용보증조건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이다.

나. 이 사건 대출이 신용보증조건을 준수하였는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대출과목란에 기업운전일반기타대출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는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 관련 이자 지원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직접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용보증서상 보증채무는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로 한정되므로, 원고가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을 실행한 것은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앞서 본 사정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 신용보증약관 제21조 제2항은 채권자(대출은행)가 대출실행 등의 업무를 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증특약의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특

약사항은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의한 대출이 '2017년 전라남도 소상공인 창업자금'에 한정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정하고 있다(대출과목란에는 기업운전일반'기타대출'이라고 되어 있을 뿐이고, 설명 이를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로 보더라도 위 특약사항이 우선한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는 전라남도와의 이 사건 지원협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B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교부받았으므로, B의 이 사건 대출 신청이 '2017년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에 기한 것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위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대출은행이 융자금을 조성하고, 행정기관이 그 이자 중 연 3% 부분을 대출은행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행정기관이 대상자를 선정하여 대출은행에 통보하면, 대출은행이 대상자에게 소상공인 창업 및 운영자금 용도로 융자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거친다.

○ 또한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의 경우 대출은행은 해당 자금 담당부서를 지정, 운용해야 하고, 행정기관에 대하여 대출실행 후 즉시 대출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대출현황 및 자금융자상황을 매월 제출해야 하며, 대출자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사전,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등 자금 관리, 운용상의 의무가 부과된다.

○ 따라서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과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은 대출 목적, 대출 절차, 대출 조건, 사후 관리 등에서 명확히 구분된다(실제로도 B는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에 따른 이자지원금을 받지 못했고, 원고가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에 따라 이 사건 대출 조건을 설정하고, 이 사건 대출을 관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특약사항을 통해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에 대하여만 신용보증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원고는 이 사건 추천결정통보서를 받지 못했으므로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 주장 사정만으로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이 이 사건 신용보증서상 보증채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이 피고의 보증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면책범위는 초과 수령 이자에 한정되므로, 원금 및 나머지 이자에 대하여는 피고의 보증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신용보증관계 성립 범위에 관한 주장으로 선택한다). 그러나 신용보증약관 제2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이 사건 면책기준 제1항 가목이 원고가 보증서의 신용보증조건(보증특약 포함)을 위반한 경우 재단책임분담금액 전액이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신용보증서상 보증채무가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에 한정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3. 나.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서 작성 과정에서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이 사건 추천결정통보서를 원고에게 직접 송부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원고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기